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제도 안내서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 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제도 안내서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 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제도 안내서





CONTENTS



1. 목적 및 활용

4p



2.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자가진단

10 p



3.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Q&A

16 p



4.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사례

28 p



5.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34 p



6. 데이터 관련법들과의 관계

44 p



[부록] 데이터 관계법령 조문

54 p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제도 안내서





PART. 01

목적 및 활용



목적 및 활용

PART. 02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자가진단

PART. 03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Q&A

PART. 04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사례

PART. 05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PART. 06

데이터 관련법들과의
관계

부록

데이터 관계법령
조문

PART 01. 목적 및 활용



1. 책자의 목적

- 2022년 4월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에 대한 제재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일임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데이터 보호의 목적은 데이터 산업에서의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을 제재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함
-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확충
- 2024년 8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로 관리되는 데이터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 시장에 공시된 상품 가격정보를 데이터로 수집하여 비밀로 관리하면서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및 영업비밀 보호 요건 미충족
 - 새로운 개정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 질서를 정립하여 데이터의 이용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책자를 발간·배포

2.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입법 배경(2021)

- 데이터 이용·유통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데이터 가치에 대한 '합리적 보호' 체계 필요
 - 개별 데이터 자체보다, 데이터간 결합에 따라 가치가 확대되는 바, 자유롭게 데이터가 이용·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 마련 필요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데이터 보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데이터 구축·저장을 위한 노력·비용에 대하여 합당한 대가회수가 불확실(복제가 용이하고, 타인의 접근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데이터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



- **대다수 데이터는 소재가 체계적으로 배열·구성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로 존재하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되기 전에는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

- 데이터의 무단 수집·유통행위를 타인의 성과를 도용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 명시적인 데이터 보호규정을 마련하여,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확립

3.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개정배경(2024)

-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데이터 보호는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호의 공백 발생**

- 개정법은 비밀로 관리되는 데이터 보호의 공백 영역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행위 요건 중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을 삭제

데이터 유형		개정전	개정후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비밀관리 X	-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비밀관리 O	공지	공백 영역	
	비공지	영업비밀	영업비밀

4.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주요내용

-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금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

- (보호대상)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데이터로서, ①전자적으로 관리되며, ②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③기술상·영업상 정보(단, 영업비밀 제외)

* 특정 지역의 대풍 경향을 해석할 수 있는 기상 데이터, 최단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지도 데이터 등

-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제4조, 제5조) 및 행정조사·시정권고·시정명령·과태료(제7조, 제8조, 제20조) 등 행정적 구제조치 가능

-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제18조) 근거 마련

관련 조문

카. 데이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책자의 활용 방법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주요 질의응답(Q&A), 사례를 제공하여 데이터의 취득 및 사용 등의 행위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와 신고방법 등을 제공하여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 외에도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개발자,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운영자 등 모든 기업 및 사람이 본 책자를 활용할 수 있음

6. 주의사항

- 본 책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데이터 보호 관련 조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영업비밀로서의 데이터 보호와 「저작권법」에 의한 편집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①비공지성, ②경제적 유용성, ③비밀 관리성을 충족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금지 청구소송(민사적 구제), 형사고소* 등의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 (벌칙) 해외유출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국내유출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제도 안내서





PART. 02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자가진단



PART. 02

PART. 01

목적 및 활용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자가진단

PART. 03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Q&A

PART. 04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사례

PART. 05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PART. 06

데이터 관련법들과의
관계

부록

데이터 관계법령
조문

PART 02.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자가진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검방법

성립요건(공통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부정경쟁행위(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성립

구 분	성립요건	YES	NO
공통요건	① 데이터일 것 데이터산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	☐
	② 업(業)으로서 사회 통념상 사업의 수행·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	☐	☐
	③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	☐
	④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 데이터 보유자와 보유자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외의 사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등 전자적 조치를 취하는 것	☐	☐

	⑤ 상당량 축적 상당량 축적은 객관적인 수치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개별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는 정도로 축적된 경우이면 충분함. 이를테면, 특정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기 모델 정보는 이 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연령별, 지역별,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휴대전화기 모델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축적된 데이터는 이 법의 보호대상에 해당 가능. 판단 기준은 데이터의 수집·분석에 소요된 노력·시간·비용, 데이터가 지니는 부가가치, 이용 및 활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⑥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현재 이용 및 활용되고 있거나, 향후 이용 및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면 널리 해당. 이를테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시장조사 데이터 등이 있음	☐	☐
	⑦ 영업비밀이 아닐 것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로서 보호되지 않는 것 (중복보호 방지)	☐	☐

구 분	부정경쟁행위(유형)	YES	NO
유형 1. ①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부정경쟁행위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 절취, 기망, 부정접속은 부정한 수단의 예시를 의미하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는 절도죄, 사기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사회 통념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수단	☐	☐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취득) 데이터를 자기의 관리 하에 두는 것 (사용)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 (공개) 데이터를 제3자나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	☐	☐

유형 2. ②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부정경쟁행위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 적법하게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자	☐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공서양속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하며, 자기 이익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도 포함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데이터 보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신용의 실추 등 유·무형의 손해를 가할 목적을 의미	☐	☐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사용)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 (공개) 데이터를 불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 (제3자에게 제공)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	☐
유형 3. ① 또는 ②로 부터 데이터를 취득한 경우	① 또는 ②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 취득 시점에 제공대상 데이터가 부정하게 취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	☐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취득) 데이터를 자기의 관리 하에 두는 것 (사용)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 (공개) 데이터를 불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	☐	☐



유형 4.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조장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보유자의 허락이나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 등이 없을 것	☐	☐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 아이디, 패스워드를 해킹하는 프로그램 등	☐	☐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아이디, 패스워드를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예외)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	☐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제도 안내서





PART. 03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Q&A



PART. 01

목적 및 활용

PART. 02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자가진단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Q&A

PART. 04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사례

PART. 05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PART. 06

데이터 관련법들과의
관계

부록

데이터 관계법령
조문

PART 03.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Q&A



Q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보호받는 데이터는?

A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데이터로서, ①전자적으로 관리되며, ②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③기술상·영업상 정보(단, 영업비밀 제외)

Q “데이터 산업법상의 데이터”는 어떠한 의미인지?

A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등으로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Q “업(業)으로서”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업으로서”에 해당하는지?

A 무상 제공인 경우 또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사회 통념상 그것이 사업의 수행·일환으로 행하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아직 실제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데이터 보유자에게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 가능

(예시①) 데이터 보유자가 반복해서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로, 다수의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1회씩 제공하고 있는 경우나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경우

(예시②) 데이터 보유자가 익월부터 데이터 판매를 시작한다는 취지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경우

(예시③) 컨소시엄 내에서 데이터 보유자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데이터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다수를 포함. 따라서 무상으로 누구나(불특정 다수)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오픈 데이터)의 경우 제공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예시①) 회비를 지불하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 회비를 지불하고 제공 받는 사람

(예시②) 데이터를 공유하는 컨소시엄이 참여에 대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람들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에 해당하는지?



데이터 보유자와 보유자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이외의 사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전자적으로 취하는 조치

(예시①) ID, 비밀번호 등과 같이 특정인만이 아는 접근 제한

(예시②) IC 카드, 특정 단말기기, 토큰 등의 특정인만이 보유하는 접근 제한

(예시③) 생체 정보와 같은 특정인만의 인적 속성에 해당하는 접근 제한

(예시④)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 이외의 제3자의 간섭을 차단한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접근 제한



“상당량 축적”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상당량 축적”에 해당하는지?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될 정도로 축적된 경우라면 해당. 예를 들어, ‘빅데이터’ 뿐 아니라, 전자적으로 축적됨으로써 가치를 가지는 경우라면 모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가 축적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 이용 및 활용 가능성, 거래가격 및 데이터의 창출·수집·해석·관리에 투입된 노력, 시간, 비용 등을 통해 판단. 객관적인 수치가 정해진 것은 아님

(예시①) 개인정보가 가명처리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가명정보)를 전국 구역에서 축적하고 있는 사업자가 특정 구역(예: 서울) 단위로 추출한 가명정보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특정 구역 단위의 데이터라 하여도 거래가격이 발생할 정도로 축적된 것이라면 보호대상에 해당

(예시②) 개인정보가 가명처리된 자동차의 주행이력(가명정보)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를 삭제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거래되는 데이터가 거래가격이 발생할 정도로 축적된 것이라면 보호대상에 해당

(예시③) 특정 지역의 태풍 경향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비용을 투입하여 축적한 기상 데이터

(예시④) 암 진단용 AI를 실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병원의 암 진단 결과데이터의 집합물로서, 분석 및 해석에 노력, 시간, 비용이 투입된 것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현재 이용 및 활용되고 있거나, 향후 이용 및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면 해당. 예를 들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시장조사 데이터 등이 있을 수 있음

(예시①) 기술상의 정보로는 최단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지도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세트 또는 해당 학습으로부터 얻은 학습완료모델 등

(예시②) 영업상의 정보로는 소비동향 데이터, 시장조사 데이터 등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을 삭제하고, “제 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추가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비밀로 관리된 데이터가 추후 공지되거나, 공지 데이터를 취합·가공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기존 ‘비밀관리성’ 요건을 개선함. 일본에서도 한정제공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시, “비밀로 관리된 데이터”를 보호범위에서 제외 하였으나, 입법 후 다양한 가상 사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적 공백영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2023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로 관리된 것만 보호범위에서 제외

데이터 유형		개정전	개정후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비밀관리 X	-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비밀관리 O	공지	공백 영역	
	비공지	영업비밀	영업비밀

(사례①) A기업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B기업에 이용허락을 하며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는데, B기업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데이터를 공개한 경우, 데이터는 공지된 이후부터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며,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던 시점에도 데이터 관련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할 수 없는 문제 발생

(사례②) 시장에서 유통하고 있는 상품 가격정보를 시장조사 회사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데이터로 수집하여 비밀로 관리하면서, 필요기업에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 상품가격은 시장에 유통되는 정보이므로 공지 데이터로 평가될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며,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 발생



데이터의 “취득”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취득”에 해당 하는지?



데이터를 자기의 관리하에 두는 것을 의미

- (예시①) 서버나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신의 컴퓨터나 USB 메모리에 복제하는 행위
- (예시②) 자신의 계정에 관계되는 클라우드 서버 등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자신의 컴퓨터나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취득’에 해당)
- (예시③) 사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른 매체에 복제하는 행위
- (예시④) 데이터가 기록된 전자 파일을 첨부한 메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전송하게 하고 수신하는 행위(해당 파일에 접근 제한 등을 걸려있지 않고, 메일을 열면 데이터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메일을 제3자에게 전송하고, 수신하도록 시키는 행위
- (예시⑤) 데이터를 종이에 인쇄하여 반출하는 행위
- (예시⑥) 데이터가 열람상태로 되어있는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는 행위



데이터의 “사용”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사용”에 해당 하는지?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

- (예시①)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업(판매) 활동을 하는 행위
- (예시②)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거나 프로그램을 작성 하는 행위
- (예시③)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검색이 용이 하도록 분류하거나 재정렬하는 행위
- (예시④) 취득한 데이터의 정합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공하는 행위
- (예시⑤) 취득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데이터의 “공개”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공개”에 해당 하는지?



데이터를 불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

(예시①) 데이터를 기록한 매체(종이 매체를 포함함)를 불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건네는 행위

(예시②) 불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행위

(예시③) 데이터가 기록된 전자 파일을 불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예시④) 취득한 엑셀 형식의 데이터를 PDF로 변환 후 저장한 서버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불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

(예시⑤) 대량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에 현시하여 그것을 불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행위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제3자에게 제공”에 해당하는지?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예시①) 데이터를 기록한 매체(종이 매체를 포함함)를 제3자에게 건네는 행위

(예시②) 제3자가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행위

(예시③) 데이터가 기록된 전자 파일을 제3자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예시④) 취득한 엑셀 형식의 데이터를 PDF로 변환 후 저장한 서버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

(예시⑤)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한 후, 해당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그 서버 주소와 함께 제3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는 행위

(예시⑥) 대량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에 현시하여 그것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절취, 기망, 부정접속은 부정한 수단의 예시를 의미하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는 절도죄, 사기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사회통념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예시①) 데이터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절취하는 행위

(예시②) 데이터 보유자의 시설에 침입하여 데이터를 종이에 프린트하거나 자신의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저장하고 가지고 가는 행위

(예시③) 정당한 데이터 수령자로 위장하여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를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에 넣도록 지시하는 메일을 송신하여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온 메일이라고 오해한 데이터 보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서버에 데이터를 넣도록 시키는 행위

(예시④) 데이터 보유자에게 컴퓨터 바이러스를 보내어 그 회사가 관리하는 비공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빼내는 행위

(예시⑤) A사 제품과 기술적인 상호 호환성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사 제품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A사의 동의없이 A사의 컴퓨터(서버)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여 조작하고 비밀번호를 무력화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

(예시⑥) 데이터에 접근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데이터 접근을 위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수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해당하는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란 공서양속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하며, 자기 스스로 이익을 얻기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하려는 목적도 포함.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란 데이터의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신용의 실추 그 밖의 유·무형의 부당한 손해를 가할 목적을 의미하며, 데이터를 사용 또는 공개하면 족하고 결과로서 실제로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 보유자의 신뢰를 손상시킬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포함

(예시①) 제3자에게 공개금지라고 규정된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공개금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예시②) 제3자에게 공개금지라고 규정된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취득한 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해당 데이터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경우

(예시③) 위탁받은 분석업무에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취득한 데이터를, 그 조건을 알면서도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무단으로 자사의 신제품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데이터 보호제도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과 충돌문제는 없는지?



「부정경쟁방지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므로 기존 법률과의 충돌문제는 없으며, 「데이터산업법」에서는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구제조치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3)’에서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해당하는지?



데이터를 부정취득·사용한 자로부터 데이터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데이터 취득 시에 부정취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취득행위, 취득 후의 사용 및 공개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예시①) 외부로의 제공이 금지된 데이터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로부터 부정취득 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데이터를 제공받는 경우

(예시②) 데이터의 원보유자로부터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첨부된 경고장을 받고서도, 부정취득행위를 한 자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예시③) 데이터 제공자가 부정취득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데이터를 제공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범위는?



다른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카목 1) ~ 3)’와는 달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비 행위(카목 4)’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두고 있음.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전반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까지 도입할 경우, 데이터 활용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바, 형사적 제제조치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예비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



데이터 거래소 등의 플랫폼에서 일정한 값으로 거래되는 데이터들 중, 그 금액이 무료인 데이터인 경우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의 보호대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무료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고, 특정 가입절차를 거친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성립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①특정인 또는 특정다수에게 한정하여 제공하고, ②전자적으로 관리되며, ③상당량 축적·관리되는 ④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일 것(단, 영업비밀 제외)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를테면,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서버에 보관하고 특정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의 보호대상이 아님



처음에는 공개(오픈) 데이터였다가 나중에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되었을 경우, 기존에 공개 데이터를 사용하던 사람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지?



공개 데이터였을 시점의 사용자들은 규율 대상이 아니며, 제공대상을 한정하는 데이터로 전환한 후부터는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공개(오픈)된 데이터는 규율 대상이 아님. 공개된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되어, 제공대상이 한정된 이후에는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음. 제공대상을 한정하는 데이터로 전환한 이후의 데이터가 공개 데이터일 때와 비교하여 내용 및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제도 안내서





PART. 04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사례



PART. 01

목적 및 활용

PART. 02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자가진단

PART. 03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Q&A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사례

PART. 05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PART. 06

데이터 관련법들과의
관계

부록

데이터 관계법령
조문

PART 04.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사례



사례 적용 시 주의사항

사례 ① ~ ③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파목(성과도용행위)에 의한 법원 판결을 사례로 수정한 것으로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의 성립요건이 적용될 경우 일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례 적용에 주의 필요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2021.12.7) 전에는 성과도용행위가 동법 제2조제1호카목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파목으로 변경

※ 현 '사례 ③'의 경우,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의 성립요건 중 "특정인 또는 특정다수에게 제공" 및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 요건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파목에 의한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사례 ①

● 사건개요

- A사는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회사로 회원에게만 숙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숙박정보를 수집·체계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숙박정보 수집과 분류, 갱신·검증·보충 업무를 위해 인건비·마케팅비·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함
- B사는 동종업계의 경쟁사로 A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제휴 숙박업소 목록, 주소 정보, 가격 정보 등을 크롤링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공유함

● 법원 판결

- 1심 법원은 B사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차별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대량의 정보를 무단 복제하여 A사의 어플리케이션에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A사가 대량 호출신호를 감지하고 IP 주소를 차단함에도 B사는 IP 주소를 변경하면서까지 크롤링을 지속함으로써 A사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A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 또한, B사가 크롤링을 할 때 A사의 서버를 쓰는 것은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 크롤링 프로그램을 타사의 웹서비스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설치한 사실 등을 고려하였을 때, B사는 크롤링을 통해 무단 복제하는 행위가 A사의 의사와 이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된다는 사정 또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함
- 이에 1심 법원은 B사가 A사의 노력에 의한 결과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A사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B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2심 역시,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쟁사의 정보를 복제하여 자신의 영업에 이용한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임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다만, 금지대상의 내용이나 방법을 특정하지 못해 금지청구는 불인정(해당 사건은 당사자들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 확정)

사례 ②

● 사건 개요

- A사는 온라인 리크루팅 서비스 및 인터넷 기반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취업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회원에게만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B사도 동종업계에서 인터넷 취업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쟁사임
- B사는 A사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 없이 크롤링하여 자사 사이트에 게재하였고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도 크롤링 및 웹사이트 게재를 지속함

● 법원 판결

- 법원은 B사가 A사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는 A사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투입하여 생성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 (HTML 소스)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또한, 양사가 동종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B사는 이러한 행위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이 증대하는 등 이익을 취한 반면, A사는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HTML 소스를 복제당하여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함
- 이에 법원은 B사가 A사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대량 복제하여 B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사례 ③

● 사건 개요

- A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 주제어별로 설명을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체로 이용자들은 사이트에서 특정한 주제어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 가능함
- B사는 미러링(mirroring) 방식으로 A사 사이트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자사 사이트에서 광고를 게시하는 등 이익을 취함

● 법원 판결

- 법원은 A사가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서버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사이트의 기본방침 및 게시물 작성규칙을 정하고, 게시물 내용에 관한 이의 접수, 게시물 삭제·수정·복원 등 사이트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함
- 또한, B사는 A사 사이트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해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한 관리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A사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것 외에 B사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판단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법원은 B사가 A사 사이트의 게시물을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대량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양사를 오인·혼동하여 A사 사이트 대신 B사 사이트를 방문함으로써 A사의 광고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 이에 법원은 B사가 A사 사이트의 게시물을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B사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제도 안내서





PART. 05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PART. 01

목적 및 활용

PART. 02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자가진단

PART. 03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Q&A

PART. 04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사례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PART. 06

데이터 관련법들과의
관계

부록

데이터 관계법령
조문

PART 05.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1. 부정경쟁행위 신고방법

● 신고및상담

-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인터넷) www.ippolice.go.kr

☎ (전 화) 1666-6464

-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 (팩 스) 042-472-1708

✉ (이메일) ucid@korea.kr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담당자 앞

●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부정경쟁행위 신고 ▶ 신고서 양식

-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이메일, 팩스, 등기로 제출

2. 행정조사

● 행정조사의개요 및 목적

- 「부정경쟁방지법」(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이에 특허청 등은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이라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행정조사의 방법

행정조사 기본원칙	
◆ 필요 최소의 조사 및 조사권 남용금지 원칙 ◆ 조사목적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원칙 ◆ 기관별 중복조사 금지 원칙 ◆ 처벌이 아닌 준법목적 조사 원칙	◆ 조사 대상자, 조사 결과,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비밀유지 의무 ◆ 조사 결과 알게 된 정보의 조사목적 외 사용 및 외부누설 금지 의무

-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장부,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음(「부정경쟁방지법」 제7조제1항)
-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조사·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에 따른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조사·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에게 보여야 함
-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거하거나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목록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 및 보관이 필요함
- 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수거하거나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출자 등에게 즉시 반환해야 함

● 행정조사의 중지

-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 및 제5항)

- 조사 · 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 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함

- 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②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 · 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또는 장부, 제품 등의 수거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부정경쟁방지법」 제20조제1항제1호)

-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내용 및 시정권고 미이행 사실에 대하여 공표(「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제2항)

-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부정경쟁방지법」 제20조제1항제1의2호)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거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피신고인	업소명	대표자 성명
	사업소 소재지 또는 주소(거주지)	
	연락처 또는 사업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조항	
	성명, 상호, 상표 등	
	상품	
	법 위반 사항	
	기타 필요사항	
피신고인과의 관계		
기타 증빙서류 목록		

신고인은 위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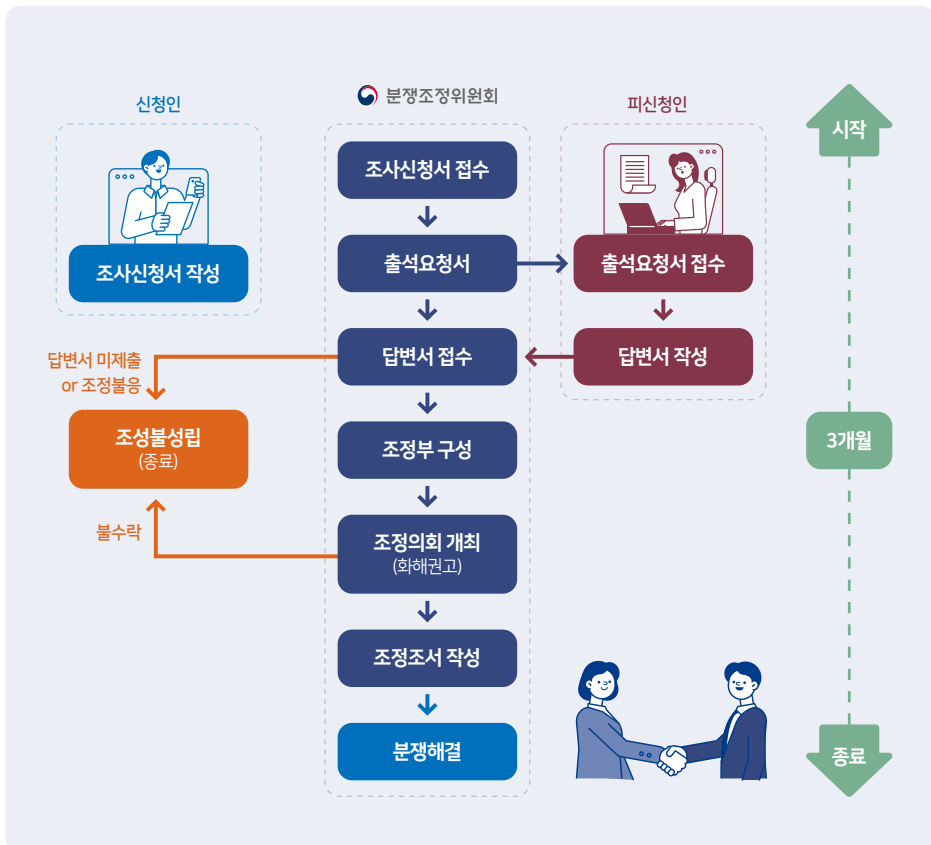
특허청장 귀하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개요

- (의의)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분야별 전문가의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장점) ①소송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②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절차가 간편하고, ④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⑤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양측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효력)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 불이행 시 강제집행까지 가능

< 분쟁조정 절차 흐름도 >



●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자격)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분쟁당사자,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영업비밀을 보유한자,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자
 - (신청대상) ①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 ②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분쟁*, ③직무발명 관련 분쟁, ④영업비밀 관련 분쟁
- * 산업재산권 등록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확인심판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

●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홈페이지) www.koipa.re.kr/adr

☎ (대표전화) 1670-9779, (팩스) 02-2183-5899

✉ (이메일) ip.adr@korea.kr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제도 안내서





PART. 06

데이터 관련법들과의
관계



PART. 01

목적 및 활용

PART. 02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자가진단

PART. 03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Q&A

PART. 04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사례

PART. 05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데이터 관련법들과의 관계

부록

데이터 관계법령
조문

PART 06. 데이터 관련법들과의 관계



※ 데이터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된 데이터 보호(부정취득·사용행위)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의한 데이터 보호 역시 다루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 필요

1.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데이터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데이터에는 '저작물' 및 '개인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 현행법상 저작물 및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며,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됨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2. 저작권법과의 관계

-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을 다루고 있음

※ 편집저작물: 편집물(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 데이터베이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직접적인 무력화 및 무력화 예비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비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부정취득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제공대상 한정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적용 가능

구 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대상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제공대상 한정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행위
보호방식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	행위규제
침해금지청구	○	○
행정적 구제조치	△ [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삭제명령 및 시정권고 등 가능 (저작권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및 제8조)
형사처벌	○	△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4항제1호)]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과의 관계

-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적용

-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

- 「데이터산업법」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있음
-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분쟁 조정을 하도록 규정

※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름

-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관한 분쟁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제4호)

구 분	데이터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대상	데이터자산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데이터 ·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단, 영업비밀 제외)
보호방식	행위규제	행위규제



유형	1. 무단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의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손해배상청구	○	○
침해금지청구	X	○
행정적 구제조치	△ (단, 시정권고만 가능)	○
형사처벌	X	△ (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카목4)'에 대해서만 형사벌)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도록 규정
-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부정취득행위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공대상 한정 데이터일 것,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것, 상당량 축적되어 있을 것,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일 것(단, 영업비밀 제외) 등의 요건이 필요

구 분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구성요건 내지 성립요건	1.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을 것 2. 해당 침입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행해지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는 행위	1.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것 2. 상당량 축적되어 있을 것 3.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단, 영업비밀 제외)에 해당하는 제공대상 한정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
침해금지청구	X	○
형사처벌	○	△ (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카목4')에 대해서만 형사벌)

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법)과의 관계

- 「산업디지털전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디지털전환법」을 따르도록 규정

※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우선적용

- 단, 산업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등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성 있음

※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행위 중 특정 행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	
부정 취득·사용·공개 등	
非산업 데이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 거래목적으로 상당량 축적,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파목 상당한 투자, 노력의 성과
산업 데이터	산업디지털전환법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노력으로 신규생성한 데이터

구 분	산업디지털전환법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대상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새롭게 생성한 산업 데이터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데이터로서, ①전자적으로 관리되며, ②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③ 기술상·영업상정보(단, 영업비밀제외)
보호방식	권리(사용수익권)를 부여하여 보호	행위규제
유형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행위	· 권한 없는 자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 권한 있는 자의 부정 사용·공개 및 제3자제공 행위 · 부정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서도 데이터를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데이터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예비 행위
손해배상청구	○	○
침해금지청구	X	○
행정적 구제조치	X	○
형사처벌	X	△ (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카목4’)에 대해서만 형사벌)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 데이터 거래 시 활용되는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제작하여 왔으며(2019년), 2022년 제정된 「데이터산업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화한 표준계약서를 2024년 하반기 중 공개 예정
 - 「데이터산업법(제12조)」이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고 있어,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내용 및 이행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담음
 -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분쟁은 「발명진흥법(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바, 표준계약서는 이를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명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제도 안내서





부록

데이터 관계법령 조문



부록

PART. 01

목적 및 활용

PART. 02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자가진단

PART. 03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Q&A

PART. 04

데이터 부정취득 ·
사용행위 사례

PART. 05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PART. 06

데이터 관련법들과의
관계

데이터 관계법령 조문

부록. 데이터 관련 관계법령 조문



1. 저작권법

[시행 2024. 2. 27.] [법률 제20358호, 2024. 8.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생략)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 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이하생략)

제6조(편집저작물)

-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 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권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이하생략)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간생략)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75호, 2021. 10. 19.,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이하생략)

제12조(데이터자산의 보호)

- ①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 (이하 "데이터자산"이라 한다)는 보호되어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75호, 2021. 10. 19.,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중간생략)

- ④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 ⑦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4항 전단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제도 안내서

발행일 : 2024년 08월 30일

발행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www.kipo.go.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제도 안내서

ISSN : 979-11-6884-201-4 13500

DOI : 10.8080/P9791168842014